



국민건강보험공단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 안내

1. 관련 근거

-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-734(2021.2.26.) 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접종 관련 근무시간 인정기준 안내”

2. 요양시설의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하여 「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」을 안내드리오니 협회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적용 대상

- － 요양시설 및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 기관 등 종사자 중 백신 예방 접종자

나. 적용 기준

사례별 구분	인정기준
○ 백신 예방접종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(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접종하는 경우) 근무 중 접종 시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• (종사자 근무 중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) 부득이하게 종사자가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에는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, 접종 후 바로 퇴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접종기관에 머무른 시간까지만 인정
○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 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(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으로 병가 등의 업무배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) 「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(7차) 일부 변경사항(2차)」 지침에 따라 ‘<u>시설장의 판단에 따른 적극적 업무배제 기준(10일)</u>’ 내에서 적용
○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별 <u>예방접종증명서*</u> 와 적극적 업무배제의 경우 ‘ <u>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</u> ’ 작성 및 보관 필수	
*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	

다.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(게시일: '21.3.3.)

- － (게시위치) 알림자료실/알림방/공지사항(현 고정공지()게시) ...추후 게시번호 60619 끝.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수신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,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,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,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장, 대한간호협회장

과장

조현숙

팀장

전송희

부장

전결 3/3
김지영

협조자

시행 요양기준부-877 (2021.3.3.) 접수 ()
우 26462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8, 센트럴스퀘어 4층(반곡동) / <http://www.nhis.or.kr>
전화 033-736-1921 전승 033-749-6374 / 081027@nhis.or.kr / 공개